

| | |
|-------|-------------------|
| 문서등록인 | |
| 문서번호 | 신약규약 1968 |
| 등록일자 | 20 19 . 11 . 26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1616

| | | | |
|-------|--------------|-------|-----|
| 총 장 | 지 시 | 부 총 장 | 결 |
| 접 일 자 | 2019. 11. 25 | 처 리 | 결 |
| 담 당 자 | 이태희 | 담 당 | 이태희 |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협조 요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등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내용
 - 2020년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 접수기간: 2019.11.25.(월) ~ 12.2.(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방문 또는 등기우편 불필요)
 - 세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 비고: 상기 홈페이지의 사업공고/공지사항 참조

붙임 1. 2020년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문
2. 2020년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첨부파일. 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수신자 전국대학교 외 1

| | | | | | | | |
|-------|----------------|-----|----------------|-------|----------------|--------|----------------|
| 전문연구원 | 기안11/25 김지영 | 주무관 | 검토11/25 조영민 | 보건연구관 | 검토11/25 서지우 | 연구관리TF | 전결11/25 김희성 |
|-------|----------------|-----|----------------|-------|----------------|--------|----------------|

협조자

시행 연구기획조정과-9693 (2019-11-25) 접수 상명-2019-11616 (2019-11-25)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연구관리TF팀 / www.nifds.go.kr

전화번호 043-719-6111 팩스번호 043-719-6100 / kimjy0517@korea.kr / 공개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45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3과제)
- 의약품 등 안전관리 (2과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2과제)

□ 추진목적

○ (식품 등 안전관리) 식품의 기준·규격 제·개정 근거 마련, 불량식품 제로화 지원연구,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및 식중독 원천차단 방안 등 근원적 예방 연구를 통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마련

○ (의약품 등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 연구 지원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독성·약리·임상 및 첨단분석·실험동물·대체 시험법 등 안전성 예측·평가 기반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비(R&D) 지원

□ 공모 대상과제 (7과제)

○ 공모형태 : 지정공모*(하향식)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공모분야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공고 과제 수 | | | | | '20년 정부출연금 |
|---------------|---------|----|----|----|----|------------|
| | 총계 | 단년 | 2년 | 3년 | 4년 | |
| 식품 등 안전관리 | 3 | 1 | 2 | - | - | 700 |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2 | - | - | 2 | - | 300 |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2 | - | 2 | - | - | 770 |
| 합 계 | 7 | 1 | 4 | 2 | - | 1,770 |

※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정부출연금·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출연연구개발과제 공모 과제목록 및 제안요청서(RFP) 세부내용은 [참고1, 2] 참조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19. 11. 25.(월) ~ 12. 2.(월)
- 접수기간 : 2019. 11. 25.(월) ~ 12. 2.(월), 17:00 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접수

※ 인쇄본 출력, 방문(우편)제출 없이 온라인 접수원결

2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 1) 국공립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과제응모 제한**(「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관련)

- 1)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5공)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협동(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과제수 제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

1.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단순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세부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출연(연), 특정(연)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실제 집행은 인건비 100%까지 허용함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신규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모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을 제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제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제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